

1. 개정이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72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병역사항 공개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서 앞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신설(별지 제3호서식)

나. 병역사항 공개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상 신고의무자의 생년월일 삭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병역사항 신고서

(앞쪽)

※ 항목별 작성방법은 뒤쪽의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등					
① 본인과의 관계	②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주 소	⑥ 병역사항	⑦ 비고
			⑤ 등록기준지		

※ 여성 신고의무자 중 기혼자는 배우자에 대해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신고대상)

* 뒤쪽의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서 배우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전에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병역의무가 면제된 사람(신고 비대상)

※ 직계비속을 적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자 직계비속 없음 [] 18세 미만임(출생 연도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기관의 장) 귀하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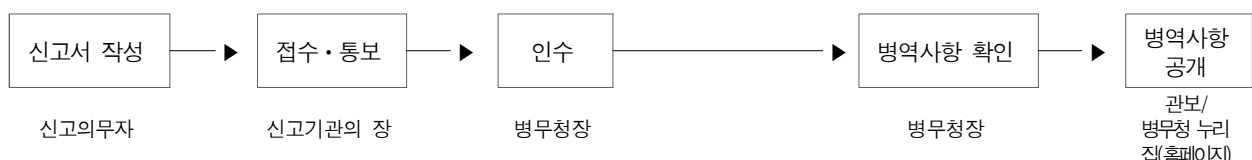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고기관(본인 소속기관) 담당 직원이 필요한 경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병역사항 공개 기간 동안 신고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43조제2에 따라 법원행정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성명, 성별·출생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관(본인 소속기관)에게 제공하도록 본인 정보 제공시스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 요구함 [], 요구하지 않음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처리절차



신고의무자는 이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 변동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다음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해 신고해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합니다)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를 포함합니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5.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6.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 직계비속은 18세 이상의 남자인 경우 신고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작성요령

- ①, ②, ③란에는 신고의무자 본인 포함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순으로 적습니다.
 - ※ 기재요령: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3남", "손자", "외손자" 등
- ⑥ 병역사항란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별로 아래 항목의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1.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예시) 0000년 병역준비역 편입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복무 분야(군별)
 -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합니다) 또는 복무기관
 - 다. 계급
 -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 마. 입영 연월일
 - 바.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 사. 전역·소집해제 사유
 4. 현역·보충역·대체역·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복무 분야(군별)
 -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합니다) 또는 복무기관
 - 다. 계급
 -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병역의무 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합니다)
 -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 ⑦ 비고란에는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비공개요구" 또는 "처분사유 비공개요구"라고 적습니다.

병역사항 공개서

신고의무자			
소속	직위(직급) ()	성명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 연도	병역사항	비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